

「2025년 소상공인 상품개선 지원사업(패키지 디자인 개선·제작)」 소상공인 모집 공고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2025년 소상공인 상품개선 지원사업(패키지 디자인 개선·제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3월 21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 사업명 : 2025년 상품개선 지원사업 (패키지 디자인 개선·제작)
- ☐ 사업목적 : 온라인 시장 초기진출 소상공인 대상 디자인 개선 및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기초역량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
- ☐ 지원대상 :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B2C 상품(유행상품)
※ 단, 아래 [참고1]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업종' 해당 시 신청 불가
- ☐ 지원규모 : 600개사 (수행기관 3개사 X 소상공인 200개사 지원)
※ 자부담금 납부 완료 기준 선착순 마감
- ☐ 지원내용 : 진단 및 컨설팅, 패키지 디자인 개선·제작, 부착제작물 지원 등
- ☐ 사업기간 : 선정일 ~ '25. 12. 31까지

추진일정

모집 공고	→	사업신청 · 접수	→	평가 및 선정	→	사업 추진
3월		3월 ~ 상시		4월 ~ 9월말		4월 ~ 11월말
한유원		한유원		한유원		수행기관 ↔ 참여기업

* 사업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이 외 업종 : 5명 미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청제한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 해당 시 신청 불가

구 분	내 용
제외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 [붙임1] 참조
휴·폐업 및 부도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제외 품목	○ 해외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 (※단, 해외 OEM 제품은 계약서 첨부시 지원 가능)
불공정 행위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 중복제한 : 아래 9개 세부 사업 중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수혜 가능

세부사업명	
① (준비) 상품 개선 지원*	⑥ (실전) SNS활용패키지
② (준비) 콘텐츠 제작	⑦ (실전)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
③ (실전) 온라인 쇼핑몰 판매	⑧ (실전) 홍보
④ (실전) 라이브커머스	⑨ (도약) 스마트물류
⑤ (실전) 로컬상품관	

* 상품 개선 지원(패키지 디자인, BI·캐릭터 디자인, 상세페이지) 내에서 1개만 지원 가능

** 당해연도 사업에 한하여 중복지원 불가

□ 패키지 디자인 개선 지원

- (진단 및 컨설팅) 소상공인 보유제품 분석, 유사제품 우수사례 안내, 개선 방향을 제시 등 의견을 반영한 개선 전략 수립
 - 컨설턴트 및 디자이너 간 대면·비대면 컨설팅 1회 이상 실시
- (디자인 개선·제작) 진단 및 컨설팅 기반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패키지 디자인 5종*을 선택하여 최종 시안을 바탕으로 디자인 개선·제작 지원
 - 패키지 디자인 범위 : 아웃박스, 스티커, 테이프, 띠지, 상품설명서 등 총 5종
 - * 패키지 디자인 5종 X 시안 2개 제작 → 패키지 디자인 5종 X 최종 시안 1개 선택
- (부착 제작물 지원) 디자인 개선·제작 범위 내에서 '부착' 활용이 가능하며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부착 제작물 2종 지원*
 - 부착 제작물 범위 : 스티커, 테이프, 띠지, 상품설명서 등 총 2종
 - * 제작물 지원 한도 : 참여업체 자부담금 한도 내 지원, 제작물 변경 불가
- (온라인 입점 지원) 참여기업 희망 시, 온라인 입점 방법* 또는 마케팅 전략 안내 및 교육 등 (자료 배포, 온·오프라인 교육 등)
 -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 (A/S 지원) 최종 디자인 결과물 지원 이후 최대 3개월 간 A/S 지원
 - * 원본파일 제공 / 해상도, 사이즈, 폰트, 컬러 변경 등 디자인 일부 변경 수준의 A/S 지원

□ 사업예산 : 참여기업 1개사당 정부보조금 234.9만원(공급가액의 90% 내외)

< 사업비 구성내역 >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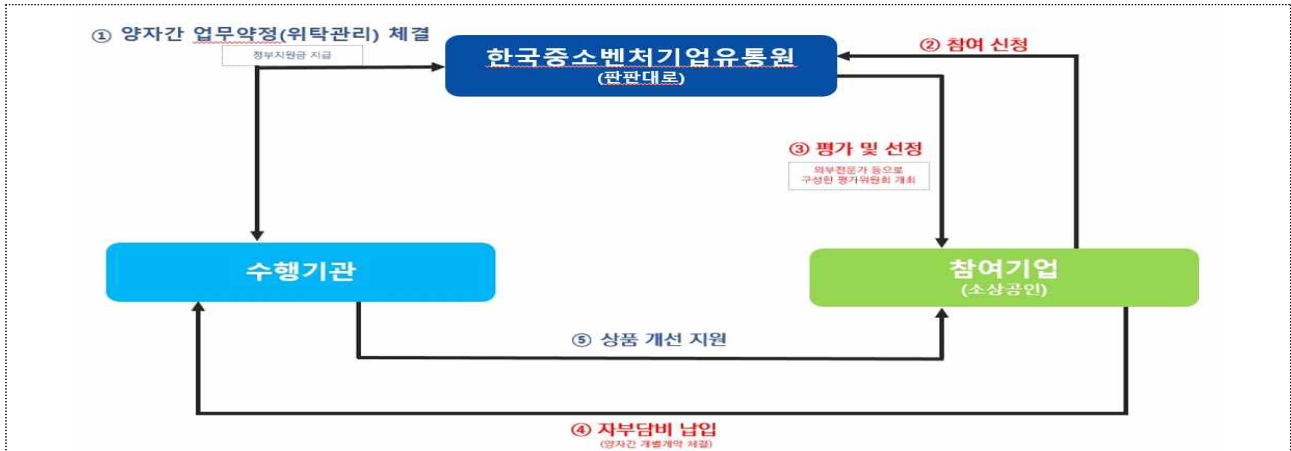
사업비 (공급가액 기준) [A]	정부보조금(90%)	①자부담금(10%)	②부가가치세 [B]	총 사업비 (부가가치세 포함) [A+B]
2,610,000	2,349,000	261,000	261,000	2,871,000

- 참여기업 부담 : ①모집부문별 지원 규모(공급가액 기준)의 10% 내외, ②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자(소상공인) 부담

** 면세사업자, 간이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 지원 체계



* 수행기관-참여기업 계약 체결 시점 이후 15일 이내에 자부담금 납부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5. 3. 21(화) ~ 연중 수시 접수

※ 자부담금 납부 완료 기준 선착순 마감으로, 선정규모 달성 시 조기 마감이 가능함

□ 신청방법 : 판판대로(<https://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수행기관 3개사 중 1개사를 필수 선택하여 신청·접수, 선정 후 수행기관 변경 불가

□ 제출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및 기타 가점서류*(우대 및 할당지원 참조) 등

< 제출서류 목록 >

구분	내용	발급처
사업자등록증	사업 신청 아이디와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번호 일치 필수	-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소상공인으로 명시된 업체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국세납세증명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납세증명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민원24
신청확약서	판판대로 사업모집 페이지 내 첨부파일 참조	[별첨2] 참고

* 유효기간 예시 : 사업신청일이 3월 1일인 경우, 유효기간이 3월 1일보다 뒤에 있어야만 인정

** 회원가입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의 사업자번호가 모두 일치해야함

*** 가점서류는 [별첨 1] 중점지원 대상 및 우대사항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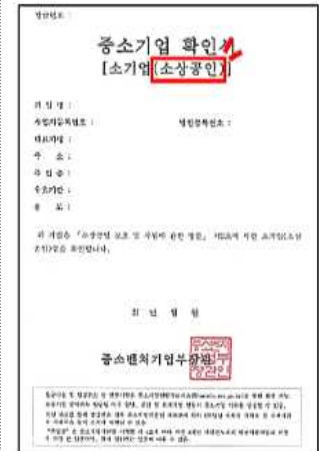
[참고.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 안내]

-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만 인정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 제출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된 경우 신청 가능
-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URL : <https://sminfo.mss.go.kr/>)

* 발급문의처

- ① 일반 상담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② 온라인 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문의 02)3215-26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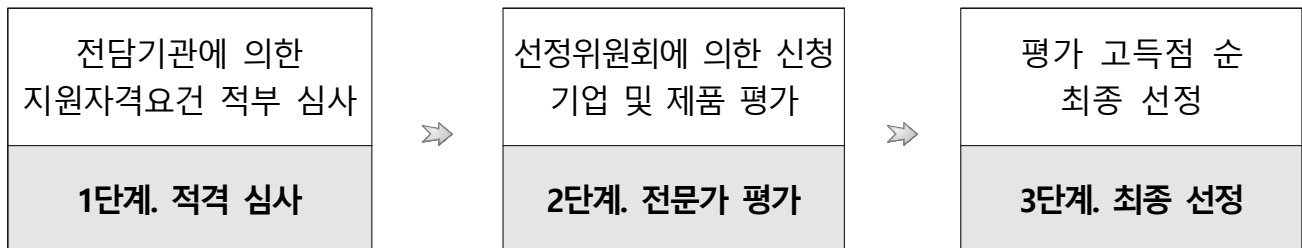


5

평가 및 선정

□ 평가 및 선정 절차

- (평가절차) : 총 2단계 심사·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심사 평가 방법

- (적격 심사) 신청 소상공인의 필수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
 -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확약서
- (전문가 평가)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서면평가 추진
(5명 이내 구성)

□ 최종 선정 안내

- 최종 선정 이후, 수행기관에서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이후 절차
별도 안내 예정

□ 유의사항

- 신청서 등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지원사업 선정 취소 등 관련규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한유원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선정 후 수행기관 변경 및 상품 변경은 불가하며, 변경을 원할 경우 사업 취소 후 재신청 하여야 합니다.
- 참여대상 기업 및 참여기업은 지원사업 진행을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수행기관-참여기업 계약 체결 시점 이후 15일 이내에 자부담금 납부를 해야 지원사업 참여가 확정됩니다.
 - 사업에 선정된 기업과 사업 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시,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연락두절, 서류제출 거부, 자부담금 입금 등)
- 본 사업 신청 시 제3자(브로커, 직원 등) 부당 개입(대리신청, 기타 수수료 요구 등) 적발 시 사업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의해 형사처벌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 신청 기업에게 귀속됩니다.

□ 통합문의처 : 온판상담소(1899-0309)

별첨 1

중점지원 대상 및 우대사항

□ 선정 우대

- 우대사항 :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최대 5점 내에서 적용)

해당 사항	비 고
① 백년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브랜드K	해당 시 +5점
② '22~'24년 아래의 정부 공모전·경진대회 입상 소상공인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대한민국 관광공모전(기념품 부문)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창업인큐베이팅 경진대회 1인창조기업·중장년 부문	
③ '22~'24년 디지털 특성화 대학 수료생	해당 시 +3점

* 본 상품개선지원사업은 디지털 특성화 대학 수료생(최근 3년)에 한하여 최대 300개사 까지 패스트 트랙으로 선정(전문가 평가 생략)

□ 신청방법 및 증빙자료

- 신청방법 : '판판대로'를 통해 사업 신청 시 우대 항목을 선택하고, 관련 증빙서류 업로드
- 증빙자료

구 분	증빙자료
① 백년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브랜드K	○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확인서 ○ 로컬크리에이터 최종 선정 확인서 ○ 브랜드K 확인서
② '22~'24년 정부 공모전·경진대회 입상 - 문체부 대한민국 관광공모전(기념품 부문) - 중기부 창업인큐베이팅 경진대회 1인창조 기업·중장년 부문	○ 증빙 미제출 (※ 한유원, 소진공 별도 확인)
③ '22~'24년 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 - 디지털 특성화 대학 수료자	○ 증빙 미제출 (※ 한유원, 소진공 별도 확인)

상품개선지원사업(패키지 디자인 개선·제작) 참여기업 신청확약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귀하

당사는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상품개선지원(패키지 디자인 개선·제작)”과 관련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업무가 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 본 사업은 정부보조금 이외 ①자부담(공급가액의 10% 내외), ②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를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사업임을 인지하고 신청하는 것임을 확약합니다.
- 제출한 신청서류의 모든 내용 및 문서는 허위사실이 없으며 만약 허위의 내용이 확인된 경우(사업종료 이후에도 해당)에는 선정취소 및 사업비 환수조치, 관련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동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지원대상 선정절차 및 방식과 관련한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지원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성실히 지원사업에 참여할 것이며, 이를 어길 시에는 사업비 환수, 관련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동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본 사업 참여 시, 수행기관이 본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은 수행기관과 개별계약을 체결한 소상공인과 ‘본 사업과 유사과업 또는 연관된 추가 과업 내용에 대한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사업에 선정된 기업과 사업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연락두절, 서류제출 거부 등)
- 최종 선정기업은 수행기관에 자부담금 납부를 완료하고 수행기관과 개별계약을 체결해야 지원사업 참여가 확정되며, 자부담 납부기간 내 미납한 참여기업은 사업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025. 00. 00.

서 약 자: 주식회사 ○ ○ ○
 대 표 ○ ○ ○ (직 인)

참고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앞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 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 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홍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표준산업분류	업 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다단계 방문판매업 예외규정에 따른 처리방법 >

예외규정에 따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다단계 방문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 모두 지원 가능
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따라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총액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세 포함) 합계액(가격합계액)의 100분의 3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②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 단위로 산정. 단, 다단계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함
- ③ 상기 ①,②의 내역 확인을 위해 다단계판매원 또는 판매업자에게 후원수당의 산정·지급 명세 서류를 징구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원 불가

참고2

'25년도 상품개선지원사업(패키지 디자인 개선·제작) 수행기관 목록

수행기관		기본정보			
A사 □	(주)리얼커머스	기 업 명	(주)리얼커머스	대 표 자	송채은, 박진우
		주 소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195번길 64, 2~5층		
		문 의 처	042-820-9835		
		홈페이지	realcommerce.kr		
B사 □	(주)씨앤컴	기 업 명	(주)씨앤컴	대 표 자	김태균
		주 소	서울시 마포구 홍익로5길 59, 3층		
		문 의 처	070-8894-3246, 010-7904-0418		
		홈페이지	cncom.co.kr		
C사 □	(주)마이샵온샵	기 업 명	(주)마이샵온샵	대 표 자	최대헌
		주 소	(본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4, 16층 5호		
			(공용)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문 의 처	1544-8152		
		홈페이지	myshoponshop.com		

※ 수행기관 정보 및 포트폴리오는 판판대로 사이트 내 공고내용 확인